

# 一九四三年 羅馬로부터 移轉된 貨幣金事件

吳 在 根

## △事件의 背景와 事實△

世界 第二次大戰이 終末에 이르거까지 獨逸軍 占領地域으로부터 獨軍에依해서 不法의으로 移轉或은 掠奪當한 貨幣金은 相當한 量에 이르렀으며 美軍이 獨逸「마켓」(Market)附近에 있는 鹽鑛에서 多量의 貨幣金을 發見한 以後부터는 特히 이와같은 貨幣金의 戰後處理問題가 聯合國사이에 많은 論議를 일으켰다. 戰爭中 樞軸軍에依해서 掠奪된 貨幣金中에는 그 所屬國이 判明될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했으나 그大部分은 所屬國判明이 不可能하였고 設或 判明이 되었다 하더라도 本事件의 境廻와 같이 第三國의 介入으로 말미암아 此貨幣金의 戰後處理問題는 加一層 極甚한 難關에 逢着하게 되었다.

當時 美國財務省의 一部에서는 此貨幣金을 戰利品의 一部로서 占領發見한 美國이 引受해야 한다는 見解도 있었으나 美國務省內의 支配的인 見解는 戰後荒廢化된 諸國의 通貨安全回復을 爲하여 이 貨幣金을 最善의 方法으로 使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一九四六年一月十四日 賠償에關한 協定이 巴里에서 締結되었고 英國·美國·佛蘭西·알바니아 等 十八個國이 調印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賠償協定은 此貨幣金을 共同管理下에 두는 同時에 獨軍에依해서 不法의으로 移轉或은 掠奪當한 諸國은 戰爭中惹起된 全體損失額에 對한 各自國의 損失額의 比率에 따라 賠償을 받는다는 原則에 合意하였다.<sup>1)</sup>

同 巴里協定爲 三部는 美國·英國·佛蘭西等 獨逸進駐國들에게 貨幣金賠償의 事務를 委任하였고 三個國 貨幣金賠償委員會를 組織하여 英國銀行을 價還時까지의 委託保管銀行으로 指定하였다.<sup>2)</sup>

이리하여 貨幣金賠償에關한 事務는 三個國賠償委員會에依해서 遂行되어 왔었다.

그러나 一九四三年九月十六日에 羅馬에서 獨軍에依해 移轉된 貨幣金에關해서는 伊太利와 알바니아 兩國間에 벌어진紛爭이 一九五一年에 이르기까지 解決을 보지 못했고 此事件에 結論을 내리지 못한 三個國貨幣金賠償委員會는 一九五一年

五月에 드디어 伊太利와 알바니아의 同意도없이 一方的으로 瓦싱턴仲裁協定을 締結하고 國際司法裁判所長이 任命하는 仲裁裁判所 判事에게 이 事件의 解決을 依頼하기로 했다.

이리하여 仲裁裁判所는 設置되었고 이 裁判所도 무엇보다도 三個國賠償委員會가 解決치 못하든問題 即一九四三年九月十六日 獨軍에 依해서 羅馬로부터 移轉된 貨幣金의 所屬國을 判決하는것을 그 根本目的으로 삼았다. 이點에 이르키까지는 瓦싱턴仲裁協定이란 單純히 三個國賠償委員會를 代身하여 새로운 仲裁裁判所를 設置함으로써 事件解決의 新方案을 選擇하였음에 不過하다고 解釋되었지만 問題는 此와 瓦싱턴協定이 다음의 몇가지를 任意로 規定함으로써 더욱 複雜해졌다. 即 瓦싱턴仲裁協定第三部는 規定하기를 萬一 仲裁裁判所가 此 貨幣金이 알바니아에 屬한다는 判決을 내리게 되면 英國은 콜푸 채널事件(Corfu Channel Case)에 對한 國際司法裁判所의 判決執行의 一部로서 此 貨幣金을 알바니아로부터 讓渡받는다는 것이다.

三個國賠償委員會는 瓦싱턴協定에 添附된 聲明을 通하여 이事實을 明白히했다. 即 萬一 仲裁裁判所가 同事件에 關與된 貨幣金이 알바니아에 屬한다고 判決을 내리면 英國은 알바니아로부터 同貨幣金을 讓渡받는다는 但 同判決이 仲裁裁判所에 依해서 宣告된 後 九十日以內에 (a) 알바니아가 同貨幣金을 英國에 讓渡해야 한다는 判決에 不服하여 國際司法裁判所에 提訴하거나 (b) 伊太利政府가 同貨幣金이 알바니아에 屬한다는 判決에 不服하거나 或은 此貨幣金에 對한 派生的인 競爭請求權者 即 伊太利와 英國中 英國政府에게 優先的으로 請求權을 賦與한대 對하여 伊太利政府가 國際司法裁判所에 異議를 提出할 境遇에는 이에 依하지 않는다는 但書を 添附했다.<sup>4,5</sup>

이리하여 瓦싱턴仲裁協定에 따라 國際司法裁判所長은 조지·소사·홀(George Sauser Hall)氏을 仲裁裁判所判事로 任命하게되었고 同仲裁裁判所는 一九五三年二月二十日 問題의 貨幣金이 알바니아에 屬한다는 要旨의 判決을 宣告했다. 이 問題의 貨幣金을 所有했던 알바니아 中央銀行은 一九二五年 羅馬에서 株式會社로서 組織되었고 株主總會와 理事會만은 羅馬에서 그리고 業務執行은 알바니아에서 行해져왔다. 最初 이 銀行의 貨幣金은 國際市場에서 伊太利貨幣로서 購入되었고 그 大部分이 羅馬에 保管되어 왔고, 當初에는 伊太利國籍을 가진 個人의 全體株의 四五%를 占有하고 있었으나 이比率는 漸次的으로 增加되어 一九三五年 伊太利政府가 모든 個人株權을 國有化했을 때는 全體株數의 八八·五%를 伊太利政府가 占有하게 되었다. 그 후에 一九四二年九月十六日 同銀行의 貨幣金은 後退하는 獨軍에 依하여 伯林으로 移轉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本事件은 一九五三年五月十九日 伊太利政府가 瓦싱턴協定規定에 따라 英國·美國·佛蘭西 相對로 國際司法裁

判所に 訴訟을 提起함으로써 始作되었다.<sup>3</sup>

一九五三年十月三十日 伊太利政府는 國際司法裁判所에 『先決의 問題』라는 書類을 提出함으로서 同貨幣金事件에 對한 國際司法裁判所의 裁判管轄權問題와 알바니아 政府가 株券의 大部分이 外國 即 伊太利에 依해서 占有되고 있었던 알바니아 中央銀行을 沒收와 同時에 國有化한데 對한 國際的인 責任에 對하여 審議判決을 要請했다.

그러나 이에 對해서 알바니아 政府는 아무런 行動도 取하지 않았으며 結局 伊太利만이 美·英·佛 三國을 相對로 訴訟을 提起하게 되었다. 一九五四年五月十日에 訴訟의 口頭審議는 始作되고 同年五月十四日에 이를 終結했다.

伊太利政府는 同 法廷에서 最後까지 主張하기를 (a) 美英佛만이 調印한 와싱톤協定에 添附된 聲明만으로는 國際司法裁判所의 同事件에 對한 裁判管轄權의 充分한 法的根據가 되지 못한다. (b) 따라서 同法廷은 此事件을 審議判決할 裁判管轄權이 없다. (c) 前述한 裁判管轄權에 對하여 國際司法裁判所가 어떠한 判決을 내리든간에 同裁判所는 英國이 提出한 諸事件에 對해서 審議判決할 管轄權이 없다는 것이었다. 英國政府는 一九五四年五月十四日 此事件에 關해서 다음과 같은 宣告를 國際司法裁判所에 要請한바 있었다. 即 (a) 伊太利政府는 國際司法裁判所의 同事件에 對한 裁判管轄權을 否認함으로써 伊太利政府가 提起한 訴訟이 와싱톤協定에 添附된 聲明의 條件과 一致되지 않음을 스스로가 立證한다. (b) 그러므로 伊太利政府는 自己가 提起한 訴訟을 스스로가 撤回或은 廢棄한 것으로 同法廷은 看做하여야 한다. (c) 萬一 國際司法裁判所가 이와 같은 英國主張과는 反對로 伊太利政府의 提訴을 繼續有效하다고 認定하더라도 國際司法裁判所는 伊太利政府가 提出한 諸般問題에 對하여도 絶對的으로 審議判決할 裁判管轄權을 가지고 있다.<sup>6</sup>

△判 旨▽

判決은 一九五四年六月十五日에 宣告되었다. 同判決에 앞서 英國政府는 伊太利政府가 國際司法裁判所의 裁判管轄權을 否認함으로써 自己가 提起한 訴訟을 自己 스스로가 撤回或은 廢棄한 것으로 看做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더욱이 伊太利政府의 先決的 異議提出은 國際司法裁判所의 規約에 違反된 것이라고 主張했으나 國際司法裁判所는 이와 같은 英國側의 主張을 却下하고 다음과 같은 理由를 陳述했다. 即 國際司法裁判所規約 第六條는 先決的 異議提出을 制限하는 文句로서는 解釋되지 않으며 따라서 原告國인 伊太利政府의 先決的 異議

提出을 制限할 何等の根據가 되지 못한다. 더구나 同裁判所는 伊太利가 先決的異議提出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提起한 訴訟을 스스로가 撤回 或은 廢棄하였다고는 看做할 수 없다. 伊太利政府의 訴訟行爲는 어디까지나 와 싱턴仲裁協定에 準해서 行해진 것으로 보며 따라서 繼續有効함을 認定한다는 要旨의 判決理由를 明示했다.

口頭審議에 있어서 英國政府는 모든 法廷論爭을 可能한限 알바니아가 貨幣金을 賠償받은境遇 이 貨幣金이 英國에 屬하느냐 伊太利에 屬하느냐 하는 問題解決에만 局限할것을 願했으나 法廷은 英國의 이와같은 主張을 拒否하고 좀더 先決的인 法的問題解決이 必要하다고 宣言하고 伊太利政府가 提出한 問題 即 알바니아가 不 法的으로 外國財產(伊太利)을 沒收國有化한데 對한 國際責任追窮과 이에 對한 伊太利政府의 權利主張에 關한 件을 解決해야 한다고 宣言하였다. 이는 同貨幣金의 所屬國을 判定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重要な 先決問題 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問題는 當事國인 알바니아가 國際司法裁判所에 出頭하지 않는限 解決하지 못할問題이다. 國際司法裁判所는 어디까지나 同裁判所의 管轄權을 承認하는 國家에 限해서 또 提訴된 具體的인 事件에 限해서만 審議判決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伊太利가 提出한 第二次問題 即 貨幣金에 對한 競爭請求權者中(伊太利와 英國中) 누구에게 優先的으로 請求權을 주느냐 하는 問題는 第一次問題 即 貨幣金의 所屬이 判定된 然後에야 發生하는 問題이며 따라서 이를 審議할 수 없다는 것이 國際司法裁判所의 判旨였다.

伊太利政府는 最後的으로 法廷에 要請하기를 設或 그것은 그렇다하더라도 第一次問題와는 全然別途로 第二次問題에 對한 假定的審議라도 해달라는 要請을 했으나 法廷은 이와같은 伊太利政府의 要請은 條件附의 要請일뿐만 아니라 이는 와싱튼聲明에 準하는 審議가 되지 못한다는 理由로서 伊太利政府의 最終的審議要請을 十三對一로써 拒否하였고 따라서 第一次問題는 알바니아의 不在로因하여 惹起되는 裁判管轄權問題때문에 審

議치 못했고 第二次問題는 一次問題가 解決될때 까지 審議할수 없다는 結果를 招來했다.

△評 釋▽

本事件을 外觀的으로만 볼때 國際司法裁判所가 또하나의 非能率的이고 非効用的인 判決을 내렸다고 非難하기 쉽다. 그러나 同事件의 背後關係 特히 貨幣金賠償을 中心으로 交錯된 複雜한 諸國家利害關係을 考察해 볼때 國際司法裁判所는 이와같은 困難과 制限된 法規內에서도 公正한 判決을 내릴려고 努力한 자취를 엿볼수 있다.

本判決에 對해서 失望이었다면 그것은 國際司法裁判所의 制度와 判事들의 態度보다는 오히려 國際司法機構에 對한 諸國家들의 消極的이고 非協助的인 態度에서 찾아볼수 있다고 하겠다. 國際司法機構에 對한 諸國의 이와같은 消極的이고 非協助的인 態度는 複雜한 諸國家利害關係의 交錯과 아울러 第二次世界大戰以後 露骨化된 美·蘇 兩大國陣營의 冷戰으로 말미암아 더욱 惡化되었는것이다.

美·英·佛 三國國은 第二次大戰中 奪還된 貨幣金의 委任保管 및 賠償管理을 責任받은 被委任國이었음에도 不拘하고, 自國이 받은 信託資産을 一方的으로 縮結된 外債은 協定을 통해 自國의 利益만을 爲한 處分을 할려는 英國의 行爲는 甚히 遺憾된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여기에서 惹起되는 問題는 貨幣金의 賠償 및 保管을 責任받은 英·美·佛 三國이 무슨 國際法上의 根據로써 國際聯合의 安全保障委員會나 國際司法機關을 通하지도 않고 알바니아에 所屬된 貨幣金을 貨幣金賠償과는 何等關係없는 콜푸찬날事件에 對한 判決執行의 一部로서 自己 스스로가 이를 讓渡받았다는 內容의 一方的인 仲裁協定縮結을 했느냐는 것이다. 勿論 巴里協定當時 이와같은 事後處理態度를 미리 알았던들 十八個國은 이協定 第三部に 調印하지 안했을 것이다. 特히 伊太利政府는 平和協定에서 獨逸에 對한 戰後請求權이 保障되어 있었고 將次 貨幣金賠償의 受惠國이 되리라는 것

도 잘 안고 있었던 英國의 이와 같은 行爲는 理解하기 어려운點이 있다.

그러나 同判決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效果를 獲得한 것으로도 生覺될 수 있다. 即 알바니아의 貨幣金請求가 어떤方向으로 決定되든간에 모든 競爭者를 除去하고 自國의 利益만을 企圖하려는 英國의 意圖가 完全히 中斷되었다는 點이다. 또한 同判決은 國際司法裁判所規約 第六二條에 依해서 原告國이 同裁判所의 管轄權問題에 對한 先決의 異議를 提出하더라도 原告國이 이미 承認한 裁判管轄權에 對해서는 何等の 影響도 미치지 않는다는 判例을 確定시켰다는 點이다. 同判決은 또 法廷에서의 基本的인 法節次도 遵守되어야 한다는 것을 再確認해주는 判例이기도 했다. 即 本件에 있어서의 實質的인 當事國은 伊太利와 알바니아였음에도 不拘하고 알바니아의 不在로 因하여 惹起된 管轄權問題 때문에 伊太利政府가 알바니아政府에 對해서 묻은 國際的責任에 對해서는 審議判決할 수 없음을 明白히 했다.

勿論 本事件判決을 全般的으로 檢討해 볼 때 國際司法裁判所의 判決態度는 當事國의 請求內容을 檢討하고 이를 解決해 볼려는 것 보다는 오히려 提起된 訴訟事件의 單純한 事務的 解決만을 爲해서 同裁判所規約 第三十六條一項을 口實로 攷하고 複雜한 國際紛爭事件을 하루빨리 裁判所에서 除去해 버릴려는 것과 같은 印象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國際司法裁判所가 此紛爭의 本質的인 核心을 이룬 問題即 누구에게 貨幣金이 屬하느냐 하는 基本問題을 解決해주지 못한點은 더욱이 이와 같은 印象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이問題를 再考해 볼 때 이와 같은 非難에 對한 責任은 國際司法裁判所의 判決態度 보다는 오히려 다음의 몇가지 事實에 基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即 主權獨立國인 알바니아를 強制로 法廷에 出頭시키지 못하는 法律的 그리고 實質的인 制約과 當事國들의 消極的이고 非協助的인 態度는 結局本質的인 問題解決을 보지 못하게 했고 따라서 二次的인 問題도 本質的인 問題解

決이 되지 않는 限 審議할 수 없다는 結果를 빚어 내었다.

그러나 一九五三年二月二十日의 仲裁裁判所의 判決은 同事件의 本質的인 問題를 取扱했으며 問題된 것은 단지 이와 같은 仲裁裁判所 設置過程이었다.

同仲裁裁判所는 貨幣金賠償에 關한 巴里協定이 戰爭中 敵國에 依해서 奪取當한 財産의 回復權(Postliminium)을 根本理念으로 삼았음을 認定하고 爲先와 同協定에서 使用된 文句『屬한다』(Belong, Apartenai)를 解釋했는 것이다. 仲裁裁判所는 辭典에서 찾아볼 수 있는 文句『屬한다』의 定義를 引用하여 이는 어떤 個人이 어떤 事物을 所有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同時에 어떤 事物이 어떤 個人에게 附屬되다 (Pertain) 關連되다 (Relate) 或은 어떤 事物이 어떤 個人의 利害와 有關하다 (Concern) 等등의 意味의 表示라고 보았다. 同仲裁裁判所는 이를 引用하여 伊太利政府는 貨幣金을 所有할 일도 없거니와 이 貨幣金은 한번도 伊太利銀行의 貨幣金으로서 使用되지도 않았고 또 私的으로 公的으로 伊太利銀行에 預置된 일도 없었다. 그 反面에 알바니아는 同貨幣金을 直接所有하지는 않았으나 알바니아 政府紙幣을 뒷받침한 貨幣金으로서 使用되었고, 또 알바니아 金融經濟에 直接의인 關連과 利害關係가 있었다는 것이다. 알바니아 金融經濟의 中央銀行役割을 擔當한 이 銀行은 알바니아 國內法의 支配를 받았고 同銀行이 此貨幣金을 그 銀行의 資産으로서 所有해왔다. 그런故로 仲裁裁判所는 巴里協定에서 意味하는 貨幣金의 所屬國은 알바니아가 된다는 判決을 宣告했다. 同仲裁裁判所는 同貨幣金이 實質적으로 羅馬로부터 伯林으로 移轉된 一九四三年 九月十六日字를 基準으로 그 所屬國判定에 對한 論理를 展開함으로써 알바니아 人民共和國이 一九四五年一月十三日에 同銀行의 全株券을 沒收와 同時에 國有化한 데 對한 國際法上의 法的根據에 對해서는 論評을 避했다.

何如問 十八個國이 調印한 巴里國際協定을 이 協定의 一部當事國에 不滿한 三個國이 任意로 그 本質的인 內

容을修正하였음은 그法的根據을 찾기어려운 일이다. 三個國은 貨幣金賠償委員會로서 이事件을 解決했어야 할 것이며 戰後貨幣金賠償과는 全然無關하였는 英國의 請求權은 이賠償事務로 부터 嚴格히 分離되었어야 할 것이다. 要컨대 國際紛爭解決을 爲한 機構로서의 國際司法裁判所의 効用性은 어디까지나 判事의 法的解釋보다는 오히려 背後에서 이를 運用하고 使用하는 諸國家의 法廷에對한 態度如何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이는 비단 이事件에서 뿐만 아니라 一九五四年 항가리領土에 내린 美空軍軍用機와 乘務員에對한 處理問題에 對해서 美國이 蘇聯과 항가리 政府相對로 訴訟을 提起한 事件<sup>7</sup> 그리고 一九五三年의 *Electricité de Beyrouth* 會社 事件에서도 잘 찾아볼수 있는 事實이다.<sup>8</sup>

註 1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Supp. Vol. 40(1946), P. 117:

2 *U. S. Dept. of State Bulletin*, Vol. 14(1946) P. 1026 et. seq. esp. P. 1027  
 2 *Ibid.*, Vol. 15(1946) P. 563, *Repor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ssion*, Sept. 27, 1946.

3 *ICJ. Reports*, 1953, P. 37

4 *ICJ. Reports*, 1949, pp. 244-250-Amount of Compensation du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Albania to United Kingdom was fixed at t. 843, 947

1951. 4. 25. 仲裁協定 全文의

91 *U. N. Treaty Series* 21: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cts Series* No. 2252

同協定의 添付를 聲明한

*Dept. of State Bulletin* Vol. 24(1951), P. 785

6 *A.J.L.*, Vol. 48(1954), P. 649

7 *ICJ. Reports* 1954, pp. 99~103

8 *ICJ. Reports* 1953, P. 107

(筆者 本大學講師)